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1년 5월 27일(목) 오전 11시00분 ~ 12시00분

2. 장 소 : 여의도 쉐링턴호텔 첼시홀

3. 회의소집 통지 내용

- 통 지 일 : 2021년 5월 18일(화)
- 통지대상 : 이사 10명, 감사 2명
- 통지방법 : 이사회소집 이메일 발송 및 유선 연락
- 회의목적 :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진도군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진도군노인복지관(분관) 시설장 무보수 겸직 심의의 건
시설장 선임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정관변경 심의의 건
비품 및 차량운반구 불용처리 심의의 건

4. 출석임원 : 박성경, 이광일, 정순돌, 김광영, 장광규, 임은경, 손병덕, 배극수, 최동주 (이사 9명)
이천화, 이창구(감사 2명)

5. 상원보고 및 개회선언

이광일 대표이사가 재적이사 10명 중 9명(박성경, 이광일, 정순돌, 김광영, 장광규, 임은경, 손병덕, 배극수, 최동주), 감사 2명 중 2명(이천화, 이창구)이 참석함을 보고하니, 박성경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6. 전차 회의록 통과

이광일 대표이사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정순돌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을 통과하다.

7. 법인운영관련 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 공개함.

8. 안건보고 및 심의

<제 1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의 202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 심정영 국장이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확정 및 보조금, 후원금 등의 예산 변동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2021년 추경예산(안) (단위:천원)

기관명	기정(A)	추경(B)	증감(B-A)	증감 주요 사유
이랜드복지재단	7,547,000	7,203,010	△343,990	이월금확정에 따른 예산증가, 주식 교부에 따른 재산수입 증가, 불용품매각에 따른 잡수입 증가, 후원금수입 감소
마포노인종합복지관	3,476,126	3,383,491	△92,635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수입 및 사업수입 감소, 후원금수입 증가
병설마포데이케어센터	480,000	488,500	8,500	인력충원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보조금수입 증가
창전데이케어센터	585,323	586,323	1,000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보조금수입 증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4,169,631	4,157,195	△12,436	기능보강사업확정에 따른 보조금 수입 감소, 코로나19에 의한 사업수입 감소, 후원금수입 증가
진도군노인복지관	1,570,484	1,875,767	305,284	분관운영에 따른 보조금수입, 사업수입, 법인전입금수입 증가, 후원금수입 증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6,317,019	6,227,928	△89,091	보조금확정에 의한 예산 감소, 후원금수입 감소, 법인전입금수입 증가, 이월금 증가
봉화군노인복지관	2,563,234	2,612,912	49,678	보조금 추가로 인한 보조금수입 증가, 이월금 증가, 공모사업 축소에 따른 후원금수입 감소

이천화 감사가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고가 되어 사전 검토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순돌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의 2021년 추경예산(안) 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 2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진도군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진도군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정영 국장이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다. 진도군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8.1%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친화주택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도군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실버공공주택내에 진도군노인복지관 분관이 설치되어 진도군으로부터 이랜드복지재단이 운영을 위탁받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향후 수탁기간 5년간 운영에 필요한 법인지원금 총 2억원이 소요될 예정임을 설명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 공개함.

이에 김광영 이사의 동의와 장광규 이사의 재청으로 박성경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 3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진도군노인복지관(분관) 시설장 무보수 겸직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진도군노인복지관(분관) 시설장 무보수 겸직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정영 국장이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다. 진도군노인복지관 분관을 새롭게 운영함에 따라 시설장의 무보수 겸직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각 시설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진도군노인복지관 분관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 4대 보험료의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설장의 보수는 진도군노인복지관에 서만 지급되고, 해당 분관에서는 무보수로 겸직을 해야함을 설명하다.

진도군노인복지관 시설장 무보수 겸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 공개함.

이 안건에 대해 임은경 이사의 동의와 장광규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진도군노인복지관(분관) 시설장의 무보수 겸직의 건을 승인 가결하다.

<제 4호 의안> 시설장 선임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시설장 선임 안건을 상정하고 심정영 국장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남목노인복지관 성세영관장이 질병 치료상 휴직하게 되어 재단이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 사회복지분야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뛰어난 황선형 관장을 남목노인복지관의 시설장으로 선임함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또한 남목노인복지관 시설장을 선임할 경우 부설기관인 남목치매보호센터 센터장은 무보수 겸직이 필요함도 함께 설명하다. 각 시설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4대 보험료의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설장의 보수는 남목노인복지관에서만 지급되고, 해당 부설인 남목치매보호센터에서는 무보수로 겸직을 해야함을 추가 설명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 공개함.

정순돌 이사의 동의와 임은경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남목노인복지관 시설장 선임과 부설남목치매보호센터 시설장 무보수 겸직의 건을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추후조치를 사무국에 당부하다.

<제 5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정관변경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정관변경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 심정영 국장이 「2021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근거하여 해당내용을 반영하고 법인운영에 따른 정관변경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정관 신규 대비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1	제5조(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5조(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2021 사회 복지법인 관리안내
2	제27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표준정관] 반영 및
3	신설	제41조(규정의 제·개정)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법인운영에 따른 정관변경
4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하는 인장은 표1, 표2와 같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 공개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 공개함.

정순돌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정관변경 심의 건을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추후조치를 사무국에 당부하다.

<제 6호 의안> 비품 및 차량운반구 불용처리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비품 및 차량운반구 불용처리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 심정영 국장이 이랜드복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비품 및 차량운반구의 불용 처분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노후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나 해당 부품이 단종 되어 수리할 수 없는 노트북 2대의 폐기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운반구 1대는 매각 처분 및 신차 구입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불용처리 할 차량운반구 및 비품현황]

연번	구분	품명	수량	취득일자	불용사유
1	차량운반구	스타렉스	1대	2012.04.30	내용연수 기준초과
2	업무용노트북	삼성 (NT910S3G)	1대	2014.12.28	노후화모델 (내용연수 기준초과)
3	업무용노트북	삼성 (NT900X3G)	1대	2014.12.28	노후화모델 (내용연수 기준초과)

정순돌 이사가 동의하고, 손병덕 이사가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비 품 및 차량운반구 불용처리 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 의장은 추후조치를 사무국에 당부하다.

9. 폐회선언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최동주 이사가 폐회 동의하고 임은경 이사가 재청하여 박성경 이사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의 의사진행과 결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출석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폐회시각 12시 00분

2021년 5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 사장 박 성 경 (인)

대표이사 이 광 일 (인)

이 사 정 순 돌 (인)

이 사 김 광 영 (인)

이 사 장 광 규 (인)

이 사 임 은 경 (인)

이 사 손 병 덕 (인)

이 사 배 극 수 (인)

이 사 최 동 주 (인)

감 사 이 천 화 (인)

감 사 이 창 구 (인)